

2007.06.18 – 06.22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미래경영본부
지역계획팀

답변서

답변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제 목	제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의요구 이유설명

○ 조례개정 추진경위

-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07. 4. 20 (원안가결)
- 제천시의회 의결일 : 2007. 5. 4 (원안가결)
- 충청북도 사전보고 : 2007. 5. 8

○ 채의요구 사유 (충청북도→제천시)

- 내용 : 조례에서 「충주호를 ⇒ 청풍호」로 명칭변경
-조례안 제21조 제3항, 별표 25, 26
- 사유 :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지명위원회와 충청북도지명위원회 심의·결정 법적절차이행 필요
-이러한 절차생략은 충청북도지명위원회 조례 제4조 위반

답변내용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입니다.

○ 먼저 우리시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보존의 큰 「틀」인,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지나치게 토지이용개발을 억제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①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③ 기준명확화, ③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 반영, ④ 관리지역에서 1만m² 미만 비공해 공장 허용등을 주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중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소정의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충청북도에 2007년 5월 8일 사전보고 하였으나, 조례안 제21조 제3항, 별표25, 26에서 충주댐과 충주호 명칭대신 “청풍호”로의 지명변경은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 제천시 지명위원회 심의와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심의·결정이라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였다는 사유로 재의요구 되었습니다.

○ 우리시가 도시계획조례안에서 충주호를 "청풍호"로 명칭을 변경한 사유는 지난, '85년말 준공된 충주호의 명칭이 강의 역사성·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시 행정관할구역에서도 충주호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전체 담수면적의 53%(51km²)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호수의 중간지역에 옛 도읍으로서 청풍이라는 지명이 현존하고 있는 역사성에 의미를 두고, 현재 진행중인 청풍호 이름찾기 10만명 서명운동과 연계, 이에 작은 실천의 하나로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우리시 관할구역에만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충주호를 “청풍호”로 명칭변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금번 도시계획조례는 지역의 새로운 행정변화를 수용하고,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 현실감 있는 조례로 거듭나고자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고 특히, 주요 개정 내용중 ①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1천m²미만 개발행위허가 허용, ② 관리지역에서 1만m²미만 비공해 공장허용, ③ 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지역에서

경사도와 입목축적 적용배제, ④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분할 반영 등은, 동 개정조례가 지역경제와 토지이용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조속한 개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 아무튼 충북도에서 재의 요구한 사유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조례 심의과정에서 예측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재의 요구된 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개정을 재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한 치의 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 아울러서, 충주호를 “청풍호”로의 명칭변경은 우리시 시민과 시의 깊은 의지와 자존심으로 추진중인 청풍호 이름찾기 로드맵인 10만명 서명운동 추진과 청풍호 이름찾기 종합계획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여, 반드시 소기의 성공을 거둘수 있도록 차분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충청북도



수신자 제천시장(법무감사팀장)
(경유)

제목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지시

1. 제천시 법무감사팀-1648(2007. 5. 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사전보고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계부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를 지시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의회의결일 : 2007. 5. 4(공포예정일 : 2007. 5. 25)

다. 위법 사항

○ 조례안 제21조제3항 “청풍호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별표25에서 정한 청풍호 주변 경관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는 규정

○ 별표25 “청풍호 주변 경관 허가기준” 중 청풍호 명칭

○ 별표26 “건축물 미관기준 적용대상 건축물 및 미관기준” 1호의 단서 조항

중 청풍호 명칭

라. 재의요구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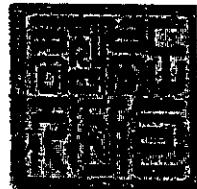
○ 측량법 제58조(지명위원회)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하면 ‘지명의 제정·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초 광역자치단체 및 건설교통부에 각각 시군구·시도지명위원회와 중앙지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측량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군구 및 시도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함.

○ 측량법 제58조 및 측량법시행령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충청북도지명위원회에서는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지명위원회 지명에 대한 보고사항 조정결정, 도관할구역 안의 지명 제정·변경 또는 조정,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은 「충청북도지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충주댐과 충주호 명칭 대신 청풍호라는 지명으로 사용하려면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 제천시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지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이라는 법적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충주댐 및 충주호를 임의로 청풍호로 변경표기 하여 사전보고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3항, 별표25 및 별표26은 「축량법」 제58조와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제4조에 위반됨. 끝.

충 청 북 도



★지방행정주사보 안병문 법무통계담당관 나기성 경책관리실장 연명석 행정부지사 미재홍

충청북도지사 05/22
정무부

협조자 지방행정사무관 나기성 지역개발팀장 신승우

시행 법무통계담당관-2750 (2007.05.22.) 접수 법무감사팀-1866 (2007.05.22.)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313 / 전송 043) 220-2319 / 개인메일 woon3ki7@cb21.net / 공개